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10일 (안내사항 참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피해자(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피해자 또는 사망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약품 사용 현황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			해당 의약품의 사용일시(기간)	
	의료기관 또는 약국				
피해구제급여 신청내용	진료비				
	부작용에 따른 질병의 명칭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질병 발생일	
	장애일시보상금				
	부작용에 따른 장애의 명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장애등급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장애 발생일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사망일	
	장례비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장례일	

「약사법」 제86조의4제1항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본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항목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 「약사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2.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됩니다(조사·감정이 어려운 때에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약사법」 제86조의4제2항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진료비: 해당 진료행위가 있는 날부터 5년 2.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또는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이 됩니다(조사·감정이 어려운 때에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신청 →	접 수	→	피해조사 및 인과관계 평가	→	심의	↓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	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통지 및 피해구제급여 지급	←	피해구제급여 수령